

# 2024 세법개론 추록 ②

2024년 12월 5일 현재  
임상엽 · 정정운 공저 / 상경사 출간

- 이 추록은 「세법개론 ①·②」 제30판 1쇄 및 2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- 이 추록은 2쇄 출간 후 발견된 몇 가지 오류수정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.
- 이 추록에 반영된 일부 개정법령 목록
  -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..... 2024.11.12. 개정
  -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..... 2024.11.12. 개정
  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..... 2024.11.12. 개정
  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..... 2024. 9.10. 개정
 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..... 2024. 5.28. 개정

## I. 세법개론 ①

### 1. 오류수정사항

| P   | 행   | 종전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6 | 下 5 | ... 처분한다(법인령 <u>160</u> ① (1) 단서). | ... 처분한다(법인령 <u>106</u> ① (1) 단서). |

### 2. 개정법령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

#### (1)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 적용기간 연장

<개정내용>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(10%) 제외 적용기한을 '2024.12.31.까지'에서 '2027.12.31.까지'로 3년간 연장하였다.

| 종전   | 개정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요건 :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*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공공주택사업자(LH 등)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</li></ul></li><li>○ 지원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법인 :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(비사업용 토지 : 10%) 적용 제외</li><li>② 거주자 :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(10%)</li></ul></li><li>○ 적용기한 : 2024.12.31.</li>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(왼쪽과 같음)</li><li>○ 2027.12.31.</li></ul> |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.

☛ p.627 下 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… 2024.12.31.까지 …

⇒ … 2027.12.31.까지 …

## II. 세법개론 ②

### 1. 오류수정사항

| P   | 행   | 종전의 내용   | 고침   |
|-----|-----|--|--|
| 341 | 下 5 | 연간 납입한도<br>= 2,000만원×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<br>(최대 4년*)] | 연간 납입한도<br>= 2,000만원×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<br>(최대 4년*)] - 누적 납입금액 |
| 740 | 下 2 | 3) <u>증여자</u> 의 연대납세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) <u>수증자</u> 의 연대납세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2. 개정법령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

#### (1)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설날·추석,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범위 확대

<개정내용> 설·추석에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와 별도로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. 그 취지는 사용인에 대한 사업자의 복리후생 활동을 지원하고 설·추석(명절) 선물에 관련된 재화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려는 데 있다.

| 종전   | 개정 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용인 실비변상적·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범위<br><input type="radio"/> 작업복·작업모·작업화<br><input type="radio"/> 직장체육·문화와 관련된 재화<br><input type="radio"/> ㉠·㉡별로 구분하여 각각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<br><input type="radio"/> ㉢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<br><input type="radio"/> ㉣ 설날·추석,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<br>※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. | <input type="checkbox"/>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범위 확대<br><input type="radio"/> (왼쪽과 같음)<br><input type="radio"/> ㉠·㉡·㉢별로 구분하여 각각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<br><input type="radio"/> ㉣ (왼쪽과 같음)<br><input type="radio"/> ㉣ 설날·추석과 관련된 재화<br><input type="radio"/> 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|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🔴 p.55 下 11행 ~ 7행,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③ 다음 ㉠·㉡·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, 이 경우 ㉠·㉡·㉢별로 각각 사 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본다.

- 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
- ㉡ 설날·추석과 관련된 재화
- ㉢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

(2)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

<개정내용>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종전에는 ‘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’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였으나,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‘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’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.

| 종전  | 개정 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혼인·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특례* 적용<br>* 양도소득세 : 12억원까지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 적용<br>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: 10년<br>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: 5년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<br>① (왼쪽과 같음)<br>② 5년 → 10년 |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🔴 p.705 上 4행,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…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…

⇒ … 그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…

**(3)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**

<개정내용>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'2024년 12월 31일까지'에서 '2026년 12월 31일까지'로 2년간 연장하였다.

| 종전  | 개정 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* 적용요건<br>*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(2년) 면제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: 1년 6개월 이상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: 2년 이상<br>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% 이하<br>②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<br>③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<br>④ 2024.12.31.까지 체결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<br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(왼쪽과 같음)<br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④ 2026.12.31.까지 체결 |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.

🔴 p.712 상 8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… 2024.12.31.까지의 기간 중에 …

⇒ … 2026.12.31.까지의 기간 중에 …

**(4)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**

<개정내용>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'도시형 생활주택'을 포함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9월 1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🔴 p.755 상 2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•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

⇒ • 아파트(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)에 해당하지 않을 것

#### (5) 소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

<개정내용>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'2025년 12월 31일까지'에서 '2027년 12월 31일까지'로 2년간 연장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🔹 p.755 上 15행 ~ 27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⑫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

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

- 전용면적이 60㎡ 이하일 것
- 취득가액이 6억원(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) 이하일 것
-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
- 아파트(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)에 해당하지 않을 것
-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

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

-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일 것
-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
-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
-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

#### (6)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액 계산방법을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서 정함

<개정내용>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, 과세표준상한율은 5%로 정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🔹 p.1008 上 18행 ~ 2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과세표준상한액

$$= \text{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}(\text{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} \times \text{공정시장가액비율}) \\ + \text{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} \times \text{과세표준상한율}(5\%)*$$

\* 과세표준상한율 : 소비자물가지수, 주택가격변동률,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%에서 5%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하는데, 현재 정해진 과세표준상한율은 5%이다.